2022
시정권고
사례집

개인적 법익 침해

제1장 사생활 보호
제2장 명예훼손
제3장 범죄사건 보도
제4장 성폭력피해자 보호
제5장 아동학대사건 보도
제6장 신고자 등 보호

제1장 사생활 보호

사례. 1 일반인 초상권 침해 ①

의결번호	제2022-901호
매 체 명	서울뉴스통신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8월 9일 사회면
기사제목	8일 밤 대치동 학원가 물에 잠겼다

1. 보도내용

「8일 밤 대치동 학원가 물에 잠겼다」제하의 사진

8일 저녁 서울과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하는 등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022.8.8) / 사진 = 프리랜서 [redacted] 기자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미성년자인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폭우로 인해 서울 강남의 대치동 학원가가 물에 잠겼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침수로 물속에 갇힌 한 아동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보도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아동의 초상을 공표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사인(私人)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보도는 당사자의 인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초상을 그대로 공표한 점에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2 일반인 초상권 침해 ②

의결번호	제2022-893호
매 체 명	일간경북신문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8월 1일 9면
기사제목	봉양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위기상황서 빛 발하다

1. 보도내용

「봉양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위기상황서 빛 발하다」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향후 보도 시 사인(私人)의 초상 공표에 따른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지자체의 가정방문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낙상 상황의 노인을 발견해 구조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구조 당시 촬영 사진 속 노인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사안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조대상자의 초상을 공표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사인(私人)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3 연예인 가족 초상권 침해

의결번호	제2022-1077호
매 체 명	YTN star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9월 28일 가요면
기사제목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아내도 SNS 비공개 전환…신혼에 날벼락

1. 보도내용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아내도 SNS 비공개 전환…신혼에 날벼락」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명 작곡가 겸 방송인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배우자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과거 방송 출연으로 당사자(배우자)의 초상이 공표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편에 관한 부정적 사건을 다루는 기사에서 단지 배우자라는 이유로 동의 없이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 또한 없으므로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4 내밀영역 공개 ①

의결번호	제2022-345호
매 체 명	뉴시스(NEWSIS)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2월 23일 문화면
기사제목	“백윤식과 첫날밤 잊지 못해”…30살 연하 前연인 책 출간

1. 보도내용

「배우 백윤식(75)의 전 연인인 곽모(45)씨가 에세이를 출간한다. 백윤식과 30세 나이를 극복하고 결혼 · 임신을 계획했지만, 이별하기까지 순탄치 않았던 과정을 담는다. (중략)

이 책은 프롤로그와 총 4개 목차로 구성 돼 있다. 곽씨는 책에서 백윤식을 영화 ‘싸움의 기술’(2006)에 출연한 T로 묘사했다. 첫 만남, 임신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도 언급했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남녀 간의 성관계를 묘사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한 유명 배우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 유명 배우와의 만남과 이별 과정에 대한 에세이를 출간한다고 보도하면서,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비록 해당 배우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남녀 간의 성관계를 묘사한 부분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성관계 묘사 부분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인용 보도한 것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

적으로 묘사한 것에 해당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5 내밀영역 공개 ②

의결번호	제2022-877호
매 체 명	디스패치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7월 26일 이슈면
기사제목	“OO OO OO이라니...” 대구 여교사 남편이 제자와 외도 의심한 까닭

1. 보도내용

「“OO OO OO이라니...” 대구 여교사 남편이 제자와 외도 의심한 까닭」의 제목

「대구의 한 [redacted] 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redacted] 모 고교 [redacted]인 A[redacted]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중략)

이번 사건은 A씨 남편 B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아내가 [redacted]로 인한 출혈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의료진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소속 학교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소재지 등 관련 정보, 성별, 나이, 근로계약 유형, 담당교과 등 각각을 조합하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들을 여과 없이 공표하고 병원 내원 당시 진단받은 질병명을 공개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성적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공중의 정당한 관심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인(私人)인 사건당사자의 신상정보와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질병명을 공개한 부분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6 내밀영역 공개 ③

의결번호	제2022-1150호
매 체 명	더데이즈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11월 14일 엔터면
기사제목	돌싱글즈 이소라 이혼사유 불륜 펜션에서 남자와 있다 딱 걸린 현장 + 영상

1. 보도내용

「돌싱글즈 이소라 이혼사유 불륜 펜션에서 남자와 있다 딱 걸린 현장 + 영상」 제하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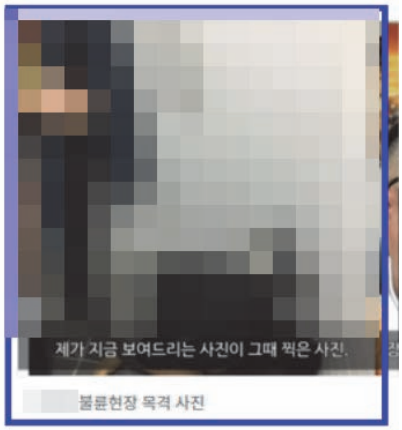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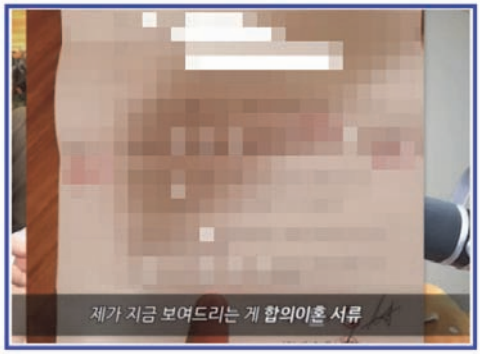

※ 원 보도에는 일부내용만 비식별 처리되어,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인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최근 방송된 연애 예능프로그램 출연자에 관하여 한 유튜버가 폭로한 과거 행적을 보도하면서, 해당 출연자의 불륜 관련 대화메시지나 현장사진, 이혼서류 등을 공표하였다.

비록 당사자가 이혼을 다룬 방송프로그램에 스스로 출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나 이혼에 관한 부부간 합의내용 등 사생활의 내밀 내지 사사적 영역에 속할 만한 사항을

공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통신내용을 상세히 게재한 것 역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7 통신비밀 침해 ①

의결번호	제2022-1105호
매 체 명	인사이트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10월 15일 엔터면
기사제목	“술 먹이고 성관계, 사귀니 바람 피워”...인기 아이돌 ‘양다리’ 폭로 나왔다 (+CCTV)

1. 보도내용

「“술 먹이고 성관계, 사귀니 바람 피워”...인기 아이돌 ‘양다리’ 폭로 나왔다 (+CCTV)」 제하의 사진 및 영상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인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SNS 게시글을 인용 보도하면서 폭로자의 상세한 주장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연예인을 공적 인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성관계 등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포함된 폭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통신내용을 상세히 게재한 것 역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8 통신비밀 침해 ②

의결번호	제2022-1146호
매 체 명	더데이즈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11월 15일 엔터면
기사제목	○○FC 축구선수 A씨 누구 ○○○ 전 여자친구가 낙태 후 사생활 폭로 잠수했다

1. 보도내용

「○○FC 축구선수 A씨 누구 ○○○ 전 여자친구가 낙태 후 사생활 폭로 잠수했다」의 제목

「○○FC 축구선수 A씨 누구 ○○○ 전 여자친구가 낙태 후 사생활 폭로 잠수했다」 제하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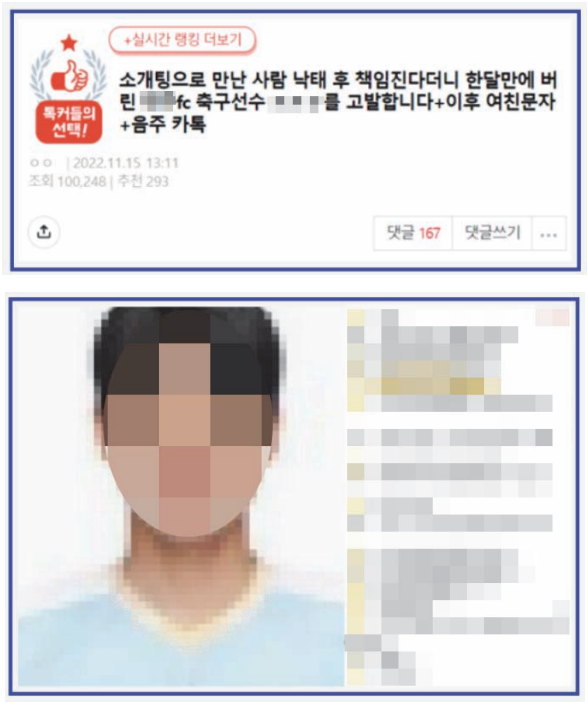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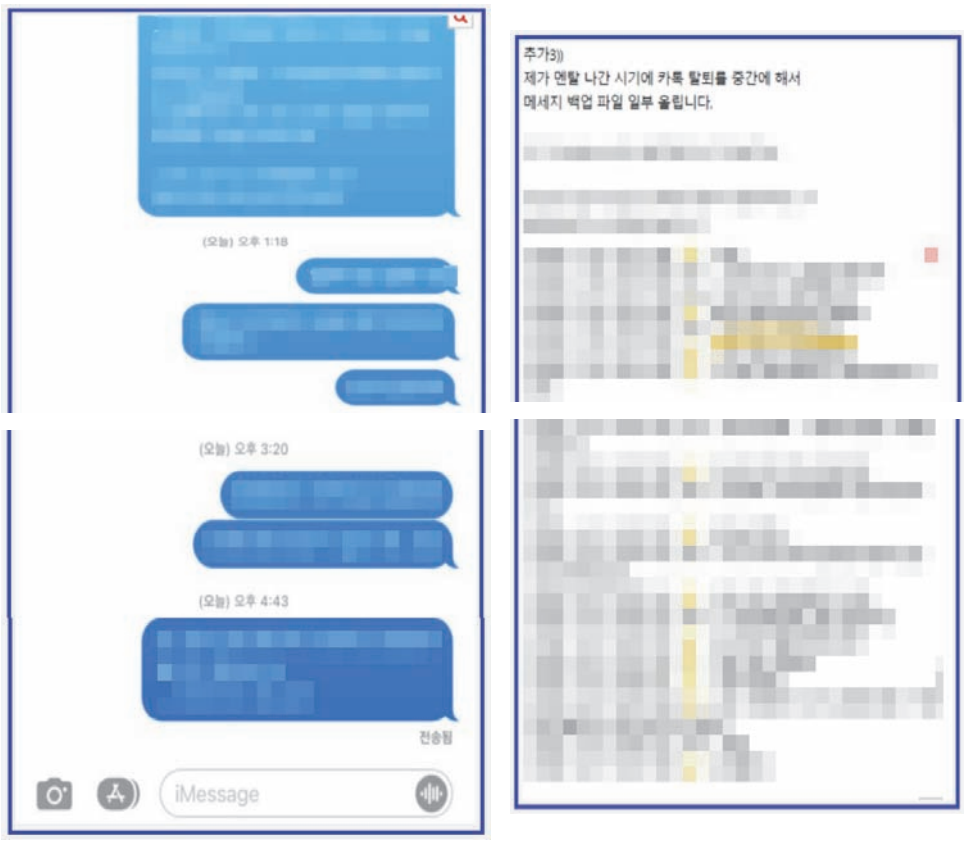

※ 원 보도에는 일부내용만 비식별 처리되어,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인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현직 축구선수에 관한 전 연인의 폭로사실을 보도하면서 해당 선수가 누구인지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들과 함께 당사자 간 사적인 대화메시지 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두문자를 사용하고 초상 사진을 음영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구단은

물론 실명과 일치하는 두문자와 비식별조치가 불충분한 초상사진을 공개한 점,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할 만한 대화메시지 내용을 함께 공표한 점 등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장 명예훼손

사례. 9 명예훼손

의결번호	제2022-991호
매 체 명	sportschosun.com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9월 12일 연예면
기사제목	“너무 비틀대 넘어질 뻔”…‘마약 투약’ ○○○, CCTV까지 퍼졌는데 침묵 [종합]

1. 보도내용

「“너무 비틀대 넘어질 뻔”…‘마약 투약’ ○○○, CCTV까지 퍼졌는데 침묵 [종합]」의 제목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연예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마약 투약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비록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볼 수 있고 마약 투약 혐의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사절차상 피의자 신분에 불과한 시점에 이를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독자를 혼동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3장 범죄사건 보도

사례. 10 피의자 신원공개

의결번호	제2022-904호
매 체 명	인터넷 국민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7월 29일 시사면
기사제목	시험지 빼돌린 광주 고교생…“서울대 꿈꾸던 ○○○○”

1. 보도내용

「시험지 빼돌린 광주 고교생…“서울대 꿈꾸던 ○○○○”」의 제목

「한밤중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하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린 광주 [redacted]학생이 ○○ ○○을 역임하는 등 학교에서 모범생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중략)

그러면서 A군은 [redacted]이었던 B군을 두고 [redacted]”이라며 “그 친구의 목표가 애초에 컴퓨터도 잘해서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를 생각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의자로 수사 중인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그가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사인(私人)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익명보도의 원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4장 성폭력피해자 보호

사례. 11 성범죄수법 상세 묘사

의결번호	제2022-511호
매 체 명	디스패치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3월 29일 Issue면
기사제목	“손깍지 끼더니 XX 만졌다” 숨진 공군 女 중사가 가해자에 당한 일(영상)

1. 보도내용

「“손깍지 끼더니 XX 만졌다” 숨진 공군 女 중사가 가해자에 당한 일(영상)」 제하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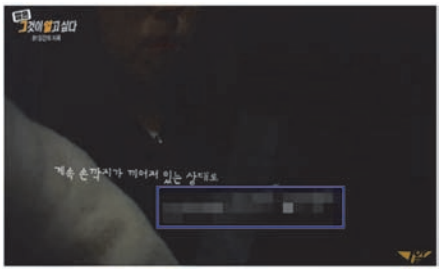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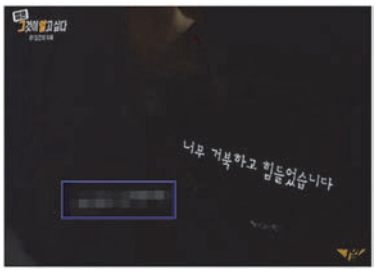

「이 중사 진술에 따르면 장 중사는 손깍지를 낀 채 그의 [redacted] (중략)

당황한 이 중사가 추행을 멈추게 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말을 걸었지만 부적절한 접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장 중사는 [redacted] 강제 추행을 했는데요. (후략)」

※ 원 보도에는 일부내용만 비식별 처리되어,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공군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공개됐다고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과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재연한 유튜브 방송을 인용하여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등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수법과 피해상태를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유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공표하지 않고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거나 정보전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위 기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12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

의결번호	제2022-1010호
매 체 명	인사이트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9월 15일
기사제목	역무원 살해범, 피해자에 먼저 성범죄 저질러...당시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해

1. 보도내용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략)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에서 재직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후략)」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범죄 사건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을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당시 이미 피해자의 고소로 진행 중이던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위를 보도하면서, 해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을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 중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가 실재한다 하더라도 협박의 수단인 촬영물 등의 구체적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 또는 공표된 바 없고 이를 성관계 영상 등으로 단정할 경우 자칫 가해자와 피해자 간 근거 없는 관계를 연상케 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독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제3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5장 아동학대사건 보도

사례. 13 아동학대행위 상세 묘사

의결번호	제2022-363호
매 체 명	뉴스1코리아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3월 2일 지방면
기사제목	[사건의 재구성] 어린 의붓딸 12년간 성 노리개 삼은 그놈…뒤늦은 눈물

1. 보도내용

「(전략) A씨는 12년 간 의붓딸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중략)

그러던 2009년 8월, A씨의 악랄한 범행은 시작됐다.

[redacted] 당시 B양의 나이는 고작 9세였다.

그는 평소 [redacted] 저질렀다.

계속된 범행으로 B양은 14세에 첫 임신을 하게 됐고, 이후에도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씨는 B양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협박과 강간을 수없이 반복했다.

[redacted]. 휴대폰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이동경로를 감시하기도 했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아동 학대행위나 피해상태가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12년 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였다.

비록 위 기사의 보도 목적이 아동 학대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하더라도, 학대행위나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한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모방범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6장 신고자 등 보호

사례. 14 진술자 신원 공개

의결번호	제2022-84호
매 체 명	인터넷 중앙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12월 8일 사회면
기사제목	딸 때린 옷걸이 숨겼지만…○○이 밝힌 진실 "○○가 그랬어요"

1. 보도내용

「딸 때린 옷걸이 숨겼지만…○○이 밝힌 진실 "○○가 그랬어요"」의 제목

「(전략) 딸 때린 옷걸이 숨겼지만…[redacted]

(중략) 수사 초기 엄마 B씨는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로 C양을 씻겼고, 물기도 닦아줬으며 옷걸이로 딸을 때린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redacted] 때리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했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가. 대상보도 중 진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나. 대상보도 중 아동학대의 가해 수법이나 피해 상태를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딸을 학대하여 숨지게 한 부부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데에 ○○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비록 가해자들에 대한 중형 선고의 배경이나 과정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범죄사건 진술인 등의 인적사항에 대한 공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항 공표로 인해 진술인의 가치관 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아동 학대행위나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모방범죄와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